

대구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16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서한규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1. 26.

판 결 선 고 2022. 2. 16.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21. 7. 1. 선고 2020가소 652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22,4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1)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1. 2. 249,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7가합159 대여금 사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이후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0.경 ‘위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159 사건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이후 원고와 피고 간에 채무를 1억 5천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합의 이후 합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 결국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합의 사항을 위반하였다면서 전액을 청구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가합15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5343)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2020. 9.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2020. 9. 30. 확정되었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가합15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에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159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에 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0. 6. 26. 2,951,600원, 2020. 7. 2. 1,770,850원을 각 수령하여 도합 4,722,450원을 추심(이하 ‘이 사건 추심’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직후인 2020. 10. 5. 피고에게 12,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한 것인데, 피고가 그 이전 이미 4,722,450원을 추심해 갔으므로 피고는 4,722,45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이고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4,722,450원의 추심 사실을 알고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았고 위 추심된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12,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진다.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므로(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에 생긴 사유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하여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의 승계인도 이의신청과 동시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참조). 기판력은 그 발생의 기준시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화해권고결정의 경우 그 확정시) 전에 존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한 모든 공격방어방법, 즉 사실과 증거자료에 대하여 지·부지, 또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실권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73, 1992. 10. 27. 선고 91다24847,24854,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청구원인은 결국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 제1항 기재 ‘1,200만 원’ 중 ‘4,772,450원’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는 주장일 수밖에 없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시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추심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추심 사실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내용 중 일부가 무효라고 볼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나아가 원고와 피고 간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 금액인 1,200만 원을 정함에 있어 ‘4,722,450원은 이미 변제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나머지 금액만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되고, 피고도 그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을 한 사실도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서범준, 판사 박치봉, 판사 서영애

1)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기재에서도 본건을 기준으로 원·피고를 기재한다.

2)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 추심된 돈 자체가 부당이득이라는 것인지,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지급한 1,200만 원 중 추심금액에 상당한 4,722,454원이 부당이득이라는 것인지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자체가 무효라고 볼 증거는 없는 점(원고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도 않고 있다), 원고가 ‘추심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후자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것으로 본다.